

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- 손해액 산정기준 변경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

도입 + 상표침해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- 2021년 4월 시행 예정



## 1. 상표법 개정 내용

가.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'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'에서 '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'으로 변경함(제110조제4항).

나.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,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,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(제110조제7항 및

제8항 신설).

다.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(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)으로 상향함(제111조).

## 2.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

가.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'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'에서 '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'으로 변경함(제53조제2항, 제115조제4항).

나.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(제1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.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